

Legal Update

2024 년 2 월

공고일	제목	법령	유형	관할 관청	주요 제·개정(입법예고) 내용	입법 예고 종료일	시행일	관련 부서
2/18	금형제조분야 기술유용행위 최초 제재	하도급 법	제재조치	공정위	■ 주요내용 *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(주)정광테크의 기술유용행위 등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'하도급법')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(30 백만 원)을 부과하기로 결정 *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 3 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·제재 ■ 적용 법조 ○ 하도급법 제 12 조의 3(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) 제 1 항 및 제 3 항 * 현행 법률 제 12 조의 3 제 4 항(2021.8.17. 개정) 제 12 조의 3(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)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요구할 수 있다. ② <생략>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<생략> 2.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■ 조치 내용 ○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형도면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(금형제조업체)의 기술자료에 해당되며, 원사업자가 금형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○ 금형도면을 제 3 자에게 유용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·제재함으로써, 금형제조업체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인 금형도면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	-	2/18	SC&P